

### 경기도제2청, 포천시 종합감사결과 공개

#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 부적정

경기도 제2청사는 2006년10월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한 포천시 종합감사결과를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제2청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경기도 감사는 적법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예방과 제도개선 등 감사의 환류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명예감사관 및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취약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수범공무원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감사를 통해 경기도는 '석유판매업 행정처분 제도개선', '채널법 제정시행' 등을 발굴하여 소관부서로 하여금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수범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도록 했다.

한편, 행정상 잘못 처리하거나 또는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50인에 대하여 시정, 주의조치 하였으며, 재정적으로는 15건 14억2천백만원의 추경, 회수 또는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아울러 법령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기도 제2청사는 2006년12월27일 제2청사 상황실에서 명예감사관, 감사자문관, 시군 감사공무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시·군 종합감사 평가회를 개최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 개선과제 등에 대하여 토의하고 토의결과를 앞으로 종합감사 운영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제2청사는 2006년도 5개 시·군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13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주의 처분하고 재정상 59건 74억2천7백만 원을 추징, 감액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에 관한 사항과 공개로 인해 부적응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 제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2006년도 포천시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주요지시사항이다. (편집자주)

####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 부적정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도록 되어있는데도 인사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기 전에 '승진대상 직렬선정(안)' 과 '인사(안)' 을 수립하여 승진예정자를 시장에게 방청(결재)받은 후 총4회에 12명(5급 3명, 6급 9명)을 인사위원회에 심의의뢰 하여 승진예정자 모두 심의의결 받도록 하여 승진임용한 사실 → 공무원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고 관련규정에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

#### ■공무원 정기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미작성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 및 지방공무원령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정기평정은 6월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정기평정 공무원 759명에 대하여 감사일(06.10.26)현재 까지도 06년7월 31일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 근무성적 평정은 승진임용,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작성하도록 조치.

#### ■회의실 등 리모델링 공사 현상공모 조건 및 수의계약 부적정

시청 소회의실(40평) 및 대강당(111평)의 리모델링공사 디자인 공모시 설계 및 시공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공모하여 회의실과 대강당을 2억3천187만6천원에 수의계약체결 하면서 동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만으로도 자격이 충분함에도 법적 자격사항이 아닌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참가자격에 과다하게 제한하였고, 실적 제한도 민간발주실적을 포함하여야 되는 데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민간실적을 배제하고 공고하였으므로 디자인 공모시 당선자와는 설계용역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당선자에게 설계 및 시공권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공고하여 부

적정하게 수의계약 체결 한 사실 → 계약 체결시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시공권까지 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부적정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형질변경 허가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과종료 시점부터 3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근린생활시설부지 조성사업 등 6개 개발사업에 대하여 1천2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또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부과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제출기한을 초과한 근린생활시설부지 조성사업 등 14개 개발사업 납부의무자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 → 개발부담금 사업시행자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관계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소홀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철거, 사용제한 등의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13~24개월이 경과된 불법건축물 18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억837만원 을 부과하지 않는 등 불법건축물의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이행강제금을 조속히 부과하도록 조치.

#### ■유기동물처리사업 부적정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뭇가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유기동물보호업무를 수의사업에 의한 동물병원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보호업무를 소외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소홀 리모델링 공사 현상공모 조건 및 수의계약 부적정

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탁단체(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경쟁에 부쳐야 하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쳐야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쳐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 유기동물처리업체 선정 부적정

2005년 유기동물처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부서에 입찰의뢰를 하지 않고 농축산과 부서 게시판에 10일간의 공고를 하여 1개 업체만 사업신청을 하였는데도 재공고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내부결정 처리하였으며 2005년4월14일 협약관한이 없는 농축산과에서 유기동물처리업소와 부당하게 협약 체결하여 약 4개월간 유기동물처리업무를 추진하여 오다가 2005년8월8일 정식으로 위탁계약(2005.8.8~2006.1.28)을 체결하였고 또한 2006년 유기동물처리업체를 선정하면서도 입찰절차 없이 2006년3월7일 읍면에 공고문을 시달하여 10일간 유기동물처리보호소 운영회장자를 접수한다고 형식적으로 공고를 한 후 2개 업체를 유기동물사업자로 위탁계약 체결한 바 있으나 유기동물처리업체가 신청한 유기동물보호소 부지는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로서 2005.1.1~2007.12.31까지 간이양육시설로 신청한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유기동물보호·관리시설로 부적합할 뿐 아니라 '05.4.11사업장 변경지로 신청한 시설 역시 단독주택 및 창고, 문화집회시설(수족관)로 유기동물보호·관리시설로 부적합 한데도 부당하게 관리시설로

#### 인정한 사실.

#### 나. 사업비 집행 부적정

2005년8월8일 유기동물처리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계약체결 이전 기간인 '05.2.1~'05.7.30까지 유기동물처리 및 고양이 증성과 시술비를 소급 인정하여 2회에 걸쳐 총 3천98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다. 폐사한 유기동물 처리 부적정

폐사한 유기동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되어있고, 유기동물처리업소에서 제출한 폐사체 등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소각한다고 제출하였는데도 사체처리 비용부담을 이유로 본인소유 토지에 불법 매립하도록 허용한 사실이 있음. → 위탁계약자 선정시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불법 매립된 폐사체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치.

#### ■식품제조업소 부적합 제품 사후관리 부적정

식품허가 또는 신고 받지 아니한 자와 식품공전상의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및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표시광고한 자가 식품을 제조 가공 소분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총 26개소에 대한 부적합제품의 시정회수나 폐기 이행 및 관련 증빙자료의 확인이나 제조업소에 출장하여 폐기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포천시청 전경

### 특별기고

## 돼지 해의 역사



김창중 수필가 본지 특약기고

과연 옛날 돼지 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살펴 보기로 하자.

699년(을해년) 대조영이 나라를 세우 진(震→발해)이라 하였으며 747년(정해년) 진덕왕(신라) 6년 국하여 박사와 조교를 두었고 771년(신해년) 12월 성덕대왕 신종을 주조 봉덕사에 바쳤으며 783년(계해년) 신덕여왕 4년 사직단(社稷壇)을 설치 국(國)을 튼튼히 하였으나 927년(정해년)에는 11월 후백제 견훤이 신라 경주에 침입하여 경애왕(敬安王)을 포석정에서 자결케 하고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敬順王)을 봉한다. 고려조에 이르러서는 1023년(현종 14년) 2월 최치원(崔致遠)을 문창후(文昌候)로 추봉(追封)하고 윤9월에는 의창수렴법(義倉收斂法)을 만들어 백성들의 식량사정을 돌보았다.

1083년(계해년) 문종 37년)에는 송나라에서 대장경을 가져다 경국사에 두었으며 1107년(정해년) 예종2년)에는 고려 윤관 장군이 5군을 거느리고 정주평으로부터 진격 말뚝 많은 여진 부락 135개처를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1227년(정해년:고종14년)에는 일본국에서 45월에 전주에 침입을 사죄하고 교역을 청하여 12월 박인(朴愼)을 보내 교빙케 한 바 있음. 1419년(기해년) 조선조 세종1년) 봉화령(烽火令)을 제정하고 이종무(李從茂)장군을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케 하여 대승을 거두었으며 유구국(오기나와)에서 사신을 보내와 친교를 하였다.

1443년(계해년) 세종 25년) 세계 제1의 최음문자 훈민정음(訓民正音: 한글)을 창제하였다. 언문청도 설치하였다.

1467년(정해년:세조13년) 1월에는 양성지로 하여금 해동성씨목을 편찬케 하였으며 2월에는 규형(龜嶺), 인지의(印地義) 등 도량형기, 측량기등을 만들었는데 하만 원각사 13층 석탑이 완성된 것은 4월이었다.

5월에는 이시애의 난이 일어났으나 8월에는 평정하고 이시애를 추살하였다.

1587년(정해년:선조 20년) 2월 녹둔도 기리포에 호적, 왜적 침입, 9월 녹둔도에는 이순신 장군이 출정 격파하였다. 10월에는 전 병사 이시에게 승자총통을 창제한 공을 인정, 병조판서를 추증하였다.

1707년(정해년:숙종 33년) 이순신 장군 사우(祠宇)에 사호(賜號)하다.(현충: 顯忠) 1767년(정해년) 영조 43년) 3월에는 임금께서 경복궁 뽕나무 뽕날대는 예를 행하였다.(採桑禮: 채상례)

윤 7월에는 함경도 감산에다 제단을 쌓고 백두산을 바라보며 제사지내게 하다.

1827년(정해년: 순조 27년) 호적법을 만들고 야간통행금지법을 시켰으며 명나라 후손들도 조용(調用)케 하였으며 과거 과장에 수시로 따라올을 못하게 하였다.

1887년(정해년:고종24년) 영국군이 거문도를 점령한 것을 2월에 이원화를 보내 철수케 하였고 우리 해군진을 설치하였으며 3월 조선

전보국이 설치되고 4월에는 아펜셀라가 정동감리교회를 창설하였다.

윤4월에는 프랑스와 조약을 맺고 비준하였으며 6월 박정양이 주미 전관대신으로 부임하였고 조신화가 유럽 5개국(영,불,독,이,오) 주자공사로 임명되었다. 9월에는 최초의 의과대학인 경성의학교와 4월에는 관해원이 개원하였으며 5월에는 동양 최초의 전차가 개설되었으며 가로등이 생겼다.

6월에는 상공학교가 설립되고 독일국왕 하인리히가 내조하였다. 9월에는 경인선이 개통되어 새 문명의 장이 열린 해였다.

1911년 중국에서는 신해혁명이 일어났다. 서양에서는 아문젠이 최초로 남극을 탐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1923년 일본의 관동대지진이 일어나 15만명이 죽었으며 수천명의 재일동포도 희생되었다.

1935년 을해년에는 불멸의 국민가요인 목포의 눈물(이만영→본명 이육재)이 탄생되었으며 춘향전이 첫 개봉되었다. 1947년 돼지해에는 UN에서 11월 남한만의 총선거를 결정하였다.

1983년 돼지해에는 6월30일 10시15분 KBS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이 전파를 타기 시작했다. 1995년 돼지해에는 1월17일 일본 고베 대지진으로 불과 12초만에 고베, 오사카가 초토화되며 6천4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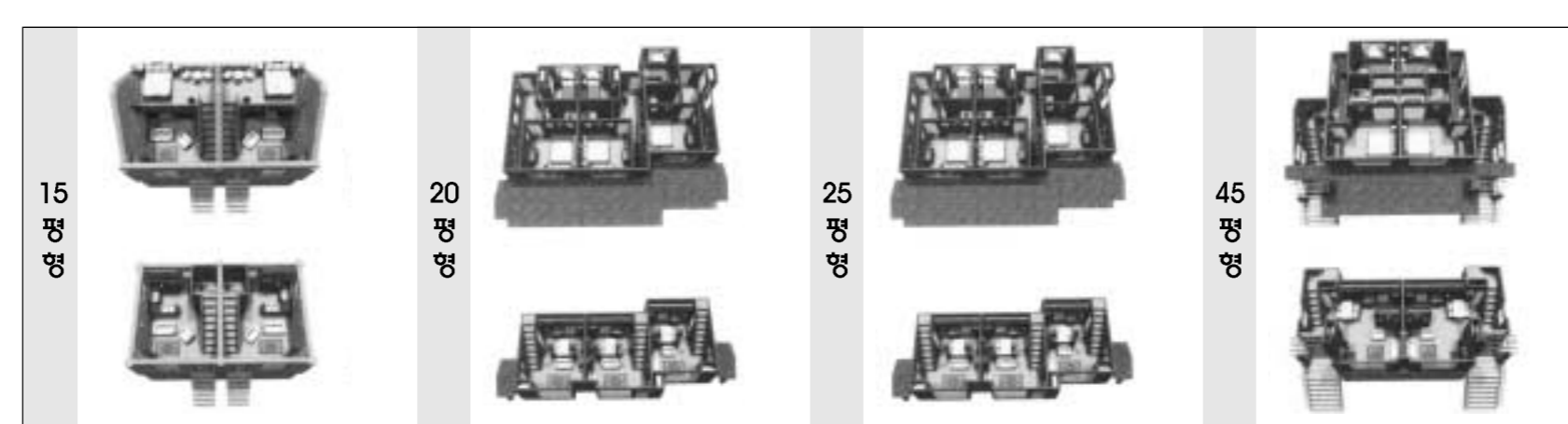
4월19일에는 미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폭발사고로 168명의 목숨이 사라졌는가 하면 내 조국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도 6월29일 삼풍백화점 5층 건물 2개동이 완전히 무너져 501명 사망, 939명이 부상하는 백화점 사상 최대의 참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과거를 거울삼아 영광스럽던 역사는 되살려 누리고 아프고 괴롭던 역사는 지혜롭게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올해 붉은 돼지해에는 내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고 FTA한미협정, 6차 회담을 통한 북의 핵문제 해결 등 수많은 국가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또 내 고향 포천의 165만평 신도시 건설, 유료 고속도로 건설, 웰빙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도시 건설의 해가 밝아오고 있다. 포천의 앞날의 영광과 행복만이 흥만찬한 해가 되기를 16만 시민들은 다함께 두손 모아 기원해 보기로 하자.

# 원목이 주는 편안함과 멋스러움이 가족의 마음까지 부드럽게...

최고급 시설을 자랑하기보다 작은 것 하나까지 배려하는 세심함. 한채 한채가 그림처럼 아름다운 프라이م 리조트는 공간배치에서 인테리어 자재 선정, 각종 시스템 설치에 이르기까지 당신과 당신 가족의 건강과 안전, 품격을 담았습니다.



■분양금액(등기제)				■리조트 시설			
분양평수	서비스면적	총평수	대지지분/평	분양금액(천원)	부대시설	내부시설	
15평형	5평(원목데크제공)	20평	52.11평	146,700	•골프연습장	•수영장	•전평형 스위트단상 IKEA 실내가구 제공
20평형	5평(원목데크제공)	25평	69.48평	195,600	•바베큐장	•정자	•홈시어터(45평)
25평형	5평(원목데크제공)	30평	86.84평	244,500	•산림욕장	•다목적 홀	•가스오븐렌지(45평)
45평형	8평(원목데크제공)	53평	156.32평	440,000	•야외공연장	•카페테리아	•월풀냉장고(25평이상)
							•런닝머신(45평)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포천시 산정호수  
**프라이م리조트**